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재갑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퇴직급여의 중간정산(중도인출)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“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”의 범위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구체화하고,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“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”로 “사유와 요건”을 “요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제1항제5호”를 “제1항제4호의3 및 제5호”로 “천재지변 등으로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”로 한다.

4의3.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제3조제1항제7호의 “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”로 하고 “사유와 요건”을 “요건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이 경우 중도인출 한도는 상환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조(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) ①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 전단에서 "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~4의2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5. <u>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</u>	1.~4의2. (현행과 같음) 4의3. <u>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</u>
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. 1. (생략) 2. <u>제1항제5호의 경우: 천재지변 등으로</u> 입은 가입자의 피해	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-----요건----- ② ----- ----- -----.
	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1항제4호의3 및 제5호</u> --- -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
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 도 제3조(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)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"주 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~6의3. (생 략) 7.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 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<u>사유와</u> <u>요건</u>에 해당하는 경우 ② (생 략) 제14조(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중도인출 사유) 법 제22조에 서 "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~3. (생 략) < 신 설 >	<u>법」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 회재난으로</u>----- ----- 제3조(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~6의3. (현행과 같음) 7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 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</u> <u>로서</u>-----<u>요건</u>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14조(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중도인출 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-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퇴 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<u>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</u>
--	--

	<u>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.</u> <u>이 경우 중도인출 한도는 상 환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.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557